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축산기술연구소 종합감사 —

2026. 7.



■ 처분요구일람표

1.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
2.	기간제근로자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교육 미실시 (시정)	5
3.	동물용 의약품 관리 소홀 (시정)	7
4.	동물 실험장비 관리 소홀 (통보)	9
5.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적정 (통보)	12
6.	연구실 안전점검결과 개선조치 소홀 (시정)	15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축산기술연구소 ☆☆☆ 및 ○○○에서는 '23.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하 : 감사대상기간이라 한다.) 종축사양관리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44명을 채용하였다.

1. 채용공고 시 평가기준 고지 미이행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시험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 제3항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공고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 ☆☆☆ 및 ○○○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표 1]과 같이 총 17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추진하면서 공고문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

[표 1] 평가기준 미고지 채용공고 내역 “생략”

2.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경상북도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 ☆☆☆ 및 ○○○에서는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면접시험 시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여 면접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구성 당시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 9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면접위원 구성 현황 “생략”

3.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소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 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 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 대상자로부터 같은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붙임]과 같이 총 4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대상자로부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감사대상기간 중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구’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생략”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교육 미 실시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 ○○○
내 용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표 1]과 같이 가축사육업, 축산업(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종축업) 허가를 받아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다.

[표 1] 축산기술연구소 허가 현황 “생략”

「축산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 ☆☆☆에서는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감사대상기간('23.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23년 ~ '25년까지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44명에 대한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6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일부(4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 기간제근로자 대상 가축병역 및 위생·안전교육 실시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교육 실시 후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동물용 의약품 관리 소홀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에서는 경상북도의 축산 산업의 발전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취득 단가가 500만원 이하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등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은 「약사법」 제85조 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약품등의 사용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 휴약기간, 유효기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는 구매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한(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약품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폐기 절차를 이행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동물용 의약품 15종(108개(병))에 대하여 사용기한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폐기하지 않았으며,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보관장소에 함께 보관하는 등 부적정한 사용 우려가 있는 상태로 관리하여 동물용 의약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한 도과 현황 “생략”

그 결과 사용기한(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의 부적정한 사용 등으로 동물의 안전한 진료 및 시험·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축산기술 보급 및 축산농가 지원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기한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동물 실험장비 관리 소홀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축산기술연구소, ○○○○
내 용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산업의 발전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동물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실험장비 물품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서는 전자태그(RFID) 활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재물조사, 불용결정 등 물품관리 전반을 전자태그 기반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 실험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물품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기에 불용처리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실험장비(54대)에 물품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았으며, [표 1]과 같이 내용연수를 초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12대나 있음에도 불용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실험실 등에 보관·방치하는 등 동물 연구 실험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내용연수 초과한 실험장비 목록 “생략”

2. 실험장비 교정관리 소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¹⁾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측정 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측정기의 교정대상 및 교정주기 설정을 위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고시(국가기술표준원 제2024-5호, 2024. 1. 2.)하였다.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교정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정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사용 중인 측정장비가 목록에는 없는 장비일지라도 결과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5조에는 측정현장에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측정기의 지침에서 제공한 교정목록의 교정주기를 준용하지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것일 뿐 최적의 교정주기는 요구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

1) 소급성 :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 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

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 장비의 교정대상 목록 여부를 파악하고, 비록 교정대상에 없는 장비일지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실험장비의 교정주기를 정하여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실험장비를 사용하면서 교정주기를 정해 운영해야 하는 대상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장비 구입 이후 단 한번도 교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동물연구 실험장비 교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교정검사 대상 실험장비 및 교정검사 미실시 현황 “생략”

그 결과, 연구 실험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함으로써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동물용 연구 실험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규정을 신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적정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 법령에 맞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자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2025.12.18.)」 제6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이 되며, 각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관리팀장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회의 소집, 기록 등을 한다’ 고 상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서로 투표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위원장을 ○○○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 역시 연구실책임자²⁾, ◇◇◇으로 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³⁾가 배제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문서 기록 소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

2) “연구실책임자” : 각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계약직 포함) 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다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실책임자가 실제 연구활동종사자이기도 하다고 소명함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만 한다.

그런데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작성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요지만 적혀있을 뿐, 참석자 발언 내용,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 상정 안건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개선조치 소홀
소 관 청 축산기술연구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실의 안전 유지 및 연구실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매년 연구실 안전점검진단을 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하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일상, 정기, 특별)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하면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축산기술연구소에는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총 67건 중 [표 1]과 같이 63건은 개선 조치하였으나, 4건(천장 타일 보수, 세안기 설치 등)은 1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결함사항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3년에 지적된 4건의 사항(유도표지 부착, 배선 덮개 설치 등)에 대해서는

12개월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재차 지적되자 개선하였으며, 해당 연구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산화에틸렌 혼합 가스통(유독 물질)을 3년이 지나도록 적절히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전 점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연구실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 등 현황 "생략"

[표 2] 연구실 안전점검 부적합 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축산기술연구소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연구실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